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결격사유에 조세 관련 법령 위반 추가 등 >
■ 정연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383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결격사유에 조세 관련 법령 위반 추가 (안 제2조제3호)	2
2.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정보의 종합관리 신설(안 제31조의2 신설) ..	5
※ 참고자료	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연욱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3. 11.

다. 회 부 일 : 2026. 3.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에게 일정 경력, 교육 이수 및 사무소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아동학대 관련 범죄 등을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운영이나 등록 요건의 유지 등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관리하는 규정은 부재하고, 조세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기획업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더라도 행정제재와 연계하는 근거가 미흡하는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관리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결격사유에 조세 관련 법령 위반을 포함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업자에게 기획업의 등록 및 운영 현황을 보고하게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안 제27조제3호 및 제31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결격사유에 조세 관련 법령 위반 추가(안 제2조제3호)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을 추가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27조(결격사유)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이 법,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3. ----- ----- ----- -----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 ----- ----- -----

현행	개정안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현행법¹⁾은 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현행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등록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임원 중에서 상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알고도 그 직을 유지하도록 한 법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대중문화예술인이 이른바 ‘1인 기획사’를 설립하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알고도 그 직을 유지하도록 한 법인

여 소득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조세 부담을 회피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이에 따라 대규모 세금 추징 사례가 발생하는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²⁾

이에 개정안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을 결격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산업전반의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업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및 공정한 산업질서 확립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제 법 위반 주체와 규제대상의 불일치 및 우회 가능성, 타 산업 및 위법행위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국세청은 조세 관련 법령 위반을 포괄적으로 결격사유로 규정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 포탈 등 일정한 유형의 위반행위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법무부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현행 제27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와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으므로 별도의 호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2) “[스트레이트] 1인기획사…안하면 바보?”, MBC, 2026.3.8.자 / “‘1인 기획사’ 세무조사 늘자 불복도 폭증…연예계 과세 논란 재점화”, 뉴시스, 2026.3.15.자 / “절세냐, 탈세냐…끊임없는 ‘1인 기획사’ 논란”, 조선일보, 2026.2.9.자 등

2.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정보의 종합관리 신설(안 제31조의2 신설)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등록 및 영업 현황 등의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련 정보를 종합관리하며, 필요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31조의2(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정보의 종합관리)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및 영업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및 영업 현황, 행정제재 처분 및 그 밖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하여금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방법·

현행	개정안
	<u>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u>

현행법³⁾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이후 운영 현황이나 등록요건 유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관리하는 규정이 없어 기획업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하여금 등록 및 영업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려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8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및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을 지망하는 사람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 내용 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는 것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업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법상 실태조사 및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기획업자에 대한 정기적 보고의무 부과로 인한 행정부담 증가 우려, 그리고 영업 현황 등 보고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연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6910호, 조은희의원 대표발의)이 2026년 3월 27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음.

문 의 처
02)6788-5379

참고 1

타 부처 및 협회 의견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타 부처 의견

부처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국세청 (‘26.3.24.)	• 관련 업무와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음 • 이에 대중문화산업의 투명한 정산 체계를 위협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제7조(채납처분 면탈), 제8조(장부의 소각·파기 등),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및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로 한정하여 수정하는 것이 헌법 비례의 원칙에 맞는 개정 방안으로 판단
법무부 (‘26.3.30)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현행법 제27조제3호는 주로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나 성매매, 인신매매 등 범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같은 호의 다른 법령 위반과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같은 호에 병렬적으로 규정하기보다 다른 호로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

• 협회 의견

협회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한국 매니지먼트 연합 (‘26.3.16.)	• (현행 유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1인기획사 관련 탈세 쟁점은 기존 기획업자의 책임 영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기획업자에 대한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은 타 산업군에 존재하지 않는 기획업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예술인의 보호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발전이라는 법률의 취지와 맞지 않음 • 기획업자의 보고를 통해 기획업 운영 등 현황을 파악하는 개정안의 방식은 실질적 운영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 현실성이 부족함 • 정부의 역할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장기적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임에도, 단속과 감시 위주의 업무는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강도를 가중시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한국음악 콘텐츠협회 (‘26.3.19.)	• (현행 유지) 조세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결격사유 포함은 일반 기업들의 조세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처우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법적 형평성 문제가 존재함 • 기 발의된 개정안(의안번호 제2216910호)과 동일하게 기획업자의 등록·운영 현황 보고는 기업의 사업 운영에 대한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어 규제로 작용될 가능성 존재 • 법률에 의한 규제보다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대한 등록 정보를 공개하는 정부 포털 구축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민간 등에 공개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시간 및 인력 소모를 축소하는 방식과 같이 업계 자정작용을 통한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가 필요